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60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이재관 · 서영석 · 최민희
임미애 · 정진욱 · 안호영
김원이 · 김남근 · 김한규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시정권고, 분쟁조정·중재,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있어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실효적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기술의 제3자 제공행위 등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

복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시정명령·벌점·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조).
- 나.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사용·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추가함(안 제2조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 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정비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 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교육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 신설).
- 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를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보호 기반을 확립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로 한다.

제2조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 거래, 고용 등의 관계에 따라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하면서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그 기술을 사용·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8조의3의 제목 중 “권고 및 공표”를 “시정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고할”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를”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권고를”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로, “권고대상이나”를 “권고 또는 명령의 대상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권고”를 “시정권고,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중 “권고를”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로, “들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를”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8조의6부터 제8조의9까지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벌점의 부과 등)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침해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이 제8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가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의7(교육명령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조의6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8조의8(과징금)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및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기순손실
2. 부채비율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의9(제척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8조의3,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피해 회복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입증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업무 지원
2. 침해 사실의 입증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전문가 자문 등 법률 지원
3.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과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또는 기술 간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 및 분석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또는 회복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8조의8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제8조의3, 제8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중소기업기술의 침해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보호 기반을 확립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여</u>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u> 마. <u>계약, 거래, 고용 등의 관계에 따라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급하면서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의무</u>
<u><신설></u>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 및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권고
또는 명령의 대상이나-----
-----.

④ -----
---시정권고, 시정명령-----

-----.

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
-----시정권고 또
는 시정명령을-----

-----들어야 한다.

② -----
-----시정권고 또
는 시정명령을-----

-----.

제8조의6(벌점의 부과 등) ① 중
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

<신 설>

<신 설>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침해행위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8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가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의7(교육명령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6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8조의8(과징금) 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및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신 설>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기순손실

2. 부채비율

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를 징수한다.

제8조의9(제척기간) 중소기업
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
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8조의3, 제8
조의6부터 제8조의8까지의 규
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신 설>

다.

제12조의2(피해 회복 지원) ① 정
부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
한 피해 입증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
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업무 지
원

2. 침해 사실의 입증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전문가 자문 등 법률
지원

3.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과 침
해가 의심되는 제품 또는 기
술 간의 유사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감정 및 분석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피해 입
증 또는 회복을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
기 위하여 제8조의8에 따라 부
과·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활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